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91
----------	-------

발의연월일 : 2025. 7. 1.

발 의 자 : 서영석 · 김주영 · 백종헌
권칠승 · 백혜련 · 백선희
황운하 · 전용기 · 이원택
이해식 · 이학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아동학대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 결정 등의 과정에서 장애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이를 반영하는 절차가 미비함.

이에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한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등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아동학대 정보에 장애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

학대 관련 통계를 추가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조치를 하거나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후단 및 제22조의4제1항 후단 신설).
- 나.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인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조치를 할 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 제3항 및 제16조의2제2항 신설).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 제1항제5호 신설).
- 마. 피해아동보호계획에 피해아동 및 해당 아동의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이에 따라 필요한 추가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2조의

4제4호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건 정보를 관리할 때에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후단 신설).

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등 장애 관련 시설의 장이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 작성 시 아동학대피해장애아동 현황과 장애아동학대 사례 분석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것”을 “것.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일시보호시설,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로 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인력(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5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 장애인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피해아동 및 해당 아동의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이에 따라 필요한 추가 지원 사항

5. 피해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계획. 다만,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제3항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같은 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같은 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

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

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장

제65조의2제2항제2호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피해장애아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동학대”를 “아동학대·장애아동학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5조(보호조치) ① ----- ----- ----- ----- ----- ----- ----- ----- <u>이 경우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인력(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4. ----- ----- ----- <u>것. 다만, 보호대상</u>

5. 6. (생략)

② ~ ⑤ (생략)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에게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다.

5.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6) -----

-----아동 일
시보호시설,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장애
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

[illegible]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⑦ ~ ⑪ (생략)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①·② (생략)

<신설>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
관리) (생략)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
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② ~ ⑦ (생략)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 3. (생략)

<신설>

<신설>

4. (생략)

② ~ ⑥ (생략)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생략)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
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

----- . 이 경우 보호대
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
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
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장애
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들의 의
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피해아동 및 해당 아동의 보
호자의 장애 여부 및 이에 따
라 필요한 추가 지원 사항

5. 피해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계획. 다만, 피해아동을 가정
에서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에 한한다.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신 설>

동 심터의 장

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
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
센터의 장 및 같은 법 제9조
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
터의 장

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장

10. (현행 제7호와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① (현행
과 같음)

② _____

_____.

1. (현행과 같음)

2. 피해아동 · 피해장애아동----

3. 아동학대 · 장애아동학대----

4.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